

수신	경기도 용인시 청덕고등학교
발신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다산인권센터 /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 인권교육 '온다' / 전국 장애인야학 협의회 경기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의정부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담당	공현 (010-2840-3328, asunaro@asunaro.or.kr)
제목	청덕고의 흡연으로 인한 퇴학 규정 등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발송일	2014년 3월 26일

-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이 뿌리 내리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입니다.
- 《네트워크》는 귀교에서 학생들의 흡연을 이유로 학생들 다수를 퇴학시키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네트워크》가 귀교가 공개한 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흡연 적발이 5회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퇴학' 조치를 취한게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네트워크》는 귀교가 학생들에게 흡연측정기를 사용하며 기준 수치를 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흡연을 적발당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증언, 그리고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경우에도 흡연을 적발당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증언을 조사 과정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 물론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흡연이 나이를 막론하고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학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과 징계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흡연이 과연 학생들을 퇴학시킬 만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흡연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며, 처벌은 그 과정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쓰여야 합니다. 단지 흡연만을 이유로 귀교가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이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가중 처벌을 반복하고 퇴학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에 좀 더 힘쓸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

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귀교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5. 흡연(일산화탄소)측정기는 그 정확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으며 간접흡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측정기 검사 결과를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흡연측정기에 관한 내용은 학교 생활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흡연측정기에 응할 것을 아무 근거 없이 강요하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흡연측정기를 학생 처벌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라이터 등을 소지한 것을 흡연을 1회 적발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역시 생활규정 등에 근거가 없고 매우 불합리한 방식이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6. 그밖에도 우리 《네트워크》는 귀교의 생활규정에서 “지나친 이성적(간) 애정행각”이 벌점 5점의 대상인 점,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이 징계 대상인 점 등 상당 부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 학교 규칙 중 학생들의 인권에 해악을 미치는 내용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단지 흡연만을 이유로 하여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행위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귀교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보류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더 적절한 교육 방식을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진심으로 교육에 힘을 쓰는 귀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